

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3월 1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1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18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5년 3월 21일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 설명자 : 교통행정과장 한 기 주)

□ 제안이유

- 교통유발 가능성이 낮은 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이 개정(2004. 12. 18, 대통령령 제18606호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부담금 면제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등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경우 종전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3천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함.(안 제3조제1호 및 제4조제3호)

- 시설물의 소유자가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감축프로그램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을 추가함.(안 별표 1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	답 변
○ 2004년도 교통유발 부담금의 부과 건수, 금액은 ?	○ 5,800여건에 23억 2천여만원 정도 임.
○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규정을 적용하면 전년도와 차이는 있는지 ?	○ 아파트 단지 상가와 기업체 약 천여 만원이 감면될것이나 신축되는 건축물을 감안하면 25억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함.
○ 자전거 이용자수의 파악방법은 ?	○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에서는 계획서와 실제 이행실태를 수시 현장 확인 하여 산출 평균치를 적용할것임.
○ 환경보호 차원에서 좋은 시책이나 감면을 받기위한 변칙운영이 예상되는데 대책은 ?	○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자전거보관대에 주차되어 있는 수량을 수시로 불시 점검을 실시할것 임.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 : 없 음
- 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수정 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359호
의결 년월일	2005. 3. 24 (제118회)

제안년월일 : 2005. 3. 23.

제안자 : 건설교통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감축프로그램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 추가하고자 하나
- 운영자가 종사원의 자전거이용 참여율을 변칙 운영할 우려가 있고, 사후 관리 부재에 따른 실효성의 미흡이 예상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2조 제2항 제10호의 『“자전거이용”이란 종사자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늘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』를 삭제
- 안 별표 1의 『자전거이용』란을 삭제

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제2항 제10호를 삭제한다.

10. “자전거이용”이란 종사자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늘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안 별표 1 “자전거이용” 란을 삭제한다.

자전거이용	상 시	○ 종사원의 참여율(%)에 따라 - 10% 이상 30% 미만 : 100분의 5 - 30% 이상 : 100분의 10
-------	-----	-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			
<p>제2조(정의) ① (생략)</p> <p>② “교통량감축프로그램”이라 함은 사설물의 소유자가 동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[별표 1]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“자전거이용”이란 종사자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늘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[별표 1]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자전거 이용</td> <td style="width: 15%; text-align: center;">상시</td> <td style="width: 70%;"> ○ 종사원의 참여율(%)에 따라 - 10%이상 30% 미만 : 100분의 5 - 30%이상 : 100분의 10 </td> </tr> </table>	자전거 이용	상시	○ 종사원의 참여율(%)에 따라 - 10%이상 30% 미만 : 100분의 5 - 30%이상 : 100분의 10	<p>제2조(정의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9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[별표 1]</p> <p><u><삭 제></u></p>
자전거 이용	상시	○ 종사원의 참여율(%)에 따라 - 10%이상 30% 미만 : 100분의 5 - 30%이상 : 100분의 10			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”를 “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2000㎡ 미만”을 “3천제곱미터 미만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2000제곱미터 이상”을 “3천제곱미터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도시교통정비촉진법”을 “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”으로 하고, 제2조제1항제1호 중 “도시교통정비촉진법”을 “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”으로 하며, 동항제3호 중 “자동차관리법”을 “「자동차관리법」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제4호 중 “부천시주차장조례”를 “「부천시주차장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1조제2호 중 “도로교통법”을 “「도로교통법」”으로 한다.

별표 1 주차장유료화 이행기준란 중 “부천시주차장조례”를 “「부천시주차장 조례」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·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 중 “부천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”를 “「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정에 의하여 단위부담금은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.</p> <p>1. 및 2. (생략)</p> <p>3.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<u>2,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</u> 단지내 상가는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</p>	<p>----- -----.</p> <p>1. 및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3천제곱미터 이상</u> ----- ----- -----</p>